

2020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사업안내



2020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사업안내



목차

I.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이란?	4
II.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6
III.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7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7
붙임1 인증 신청서(신규·갱신)	15
붙임5 사업계획서(신규)	17
붙임6 사업계획서(갱신)	22
붙임11 자가생산 증명서(서식)	29
붙임12 계약재배 협약서(서식)	30
붙임13 소규모 매입 증명서(서식)	32
붙임14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서식)	33
붙임7 신규인증 심사표	36
붙임8 갱신인증 심사표	37
붙임3 인증서(안)	38
붙임2 승계신고서	40
2. 농촌융복합산업 통계시스템 고도화	42
3.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43
서식1 현장코칭 사업 지원신청서	49
서식2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계획서	50
서식3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결과 보고서	51
서식4 만족도 조사표(안)	53
붙임1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안내	54
붙임2 현장코칭 전문위원 위촉분야	56
4.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57
5. 중앙단위 제품판로 확대	60
6. 농촌융복합산업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	62

I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이란?

6차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의 2차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내부적 요인

- 1. 중소농, 고령농 등의 소득원(일자리) 필요
- 2. 농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

외부적 요인

- 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 고조
- 2.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 3. IT, BT, NT 등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

농업의 6차산업화 ① 농촌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에 있는 **자원 활용**
 → ② 2, 3차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 ③ 농업·농촌으로 **환원**

● 왜 6차산업인가?



● 6차산업(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마크



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14.6.3일 제정, '15.6.4일 시행)」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각 시도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에는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표기할 수 있는 마크**가 부여됩니다. 해당 마크는 사업장과 생산·가공한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크 다운로드 : www.6차산업.com 또는 www.제주6차산업.com 접속 후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II.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비전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목표	<p>농촌융복합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인증 경영체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사업자수 : 전년대비 4.5% 이상 증가('19년 1,624개소 → '20년 1,700) • 사업자 인증 갱신신청 비율 : 전년대비 4.5% 이상 증가('19년 83% → '20년 87%) 		
대상	농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가공판매업체 등		
추진 과제	<p>인증경영체 내실화 통계시스템 고도화</p>	<p>성장기반 조성</p>	<p>홍보·마케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신규·갱신인증 심사·평가 - 인증 후 제품 인증표시, 주원료 원산지 확인, 인증 무자격자 조치 등 사후관리로 소비자 신뢰 확보 • 통계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매출액, 고용 현황, 정보 변경 이력 등 통계시스템 고도화 -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포털사이트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분석으로 경영체 성장플랜 제공 • 자금(융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입·가공시설 구축·운영자금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화 지원 •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테나숍 활용한 시장 친화적 제품 개발 - 대형마트·온라인 웹을 활용한 제품·체험 홍보 • 중앙단위 제품판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yond Farm 등 농촌융복합산업 체험·판매관 확대 - 스마트 콘텐츠(QR코드) 구축지원 고도화 - 명절, 여행주간 등 연계 판촉행사 추진 -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규제 발굴 및 정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센터장 회의, 현장점검 등 의견 수렴 및 정책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인식제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이슈, 성과 등 언론·방송 연계 홍보 - 농촌융복합산업 광고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소비촉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정보 확산 - 관광지 연계 여행주제 SNS 활용 홍보 - 현장 체험박람회 등 홍보부스 운영

Ⅲ. 제주 농업·농촌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기본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육성·관리를 통한 저변 확대 및 내실화 추구
- 인증 후 제품 인증표시, 주원료 원산지 확인, 인증 무자격자 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 산업형태·매출액 규모에 따른 교육·판로지원 등 사후관리 연계

▶ 개요

- **목적**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선도경영체를 발굴하고, 컨설팅·판로지원·홍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3) 및 시행(15.6.4)
- **주체**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위탁수행(국비 50%, 지방비 50%)
* 인천·세종을 제외하고 지원센터가 설치된 도에서 인근 광역시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까지 관할
- **현황** '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심사 결과 총 1,624개소 승인(누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울산	광주
1,624	177	158	116	172	251	249	204	139	97	2	0	22	29	6	2

* 인증사업자 수(누적): (15년) 802개소 → (16) 1,130 → (17) 1,397 → (18) 1,524



사업설명회



인증모니터링

▶ 추진 절차

- **절차** 인증심사(신규·갱신)는 수시로 실시(분기 1회 이상)하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인력·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시행

진행	① 인증신청 (신규·갱신)	② 사업계획 검토	③ 인증추천	④ 사업계획 평가	⑤ 인증발급
추진 기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시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자원)	농식품부
역할	인증신청 접수	제출된 사업계획 검토 (서면·현장)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적격자를 한국농어촌 자원개발원에 추천	추천 대상자 사업계획 평가	인증여부 통지 및 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① 인증신청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경영체가 **인증신청(갱신)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출**

* 인증·갱신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해당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반드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영체에 한정하여 신청 접수**

* 지원센터는 예비사업자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제 안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신청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40백만원('17년 38,239천원, '18년 42,066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

② 인증심사

- 지원센터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규·갱신 경영체 대상**으로 **인증제 심사위원회(관련분야* 전문가 3~5명)**를 구성하여 각 기준에 따라 **서면·현장심사** 진행

* 농경제, 제조·가공, 농산업, 마케팅, 체험·관광, 유통 등 최소 3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선정하되, 총 심사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

'20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심사기준

신규기준		갱신기준		배점
농촌융복합산업 기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역량 평가 - 사업주(경영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 ※증빙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계획 달성도 및 사업성과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획서에 담긴 세부사업, 목표 달성 여부 ※ 현장 실사 중심으로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도 - 최근 3년 간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인프라 구축(10) -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일자리 유지 - 최근 3년간 일자리 유지 지속률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 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2개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유지율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유지율(%)의 합산 	10
향후 계획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화 완성도 - 1차,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성 	향후 계획 (60)	좌동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경쟁력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성 -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을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가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의 인증 및 자격취득 정도(1),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수출실적(1), 관련 수상실적(2) 	가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지역내 일자리 창출 2%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7% 이상 추가 	5
계	-		-	105

가점표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가 점 (5)	인증 및 자격 취득정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취득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 발급하는 자격증, 인증서 	1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1
	수출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원료 또는 제품의 수출 실적 • 척도 :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 증빙 :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 	1
	농촌융복합 산업연관 수상실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품평회, 박람회 등 수상 실적 • 척도 : 전국단위 수상(2점), 도단위 수상(1점) • 증빙 : 수상 증서(상장, 표창장, 포상 등) 	2

③ 인증추천

- 지원센터는 인증 심사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④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및 적격자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는 시·도별 추천된 경영체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

⑤ 인증여부 통지 및 인증서 발급

- 농식품부는 최종 적격자를 확인하여 인증(갱신)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인증(갱신)여부 통지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발급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유효기간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유효기간 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기간만료 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갱신 신청**
 - * 단,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예시: 1차농산물의 변경시)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증 신청
 - **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도래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 **갱신 미신청 또는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인증유효 다음날부터 1년간 인증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원센터는 인증서 회수 등 적의조치
 - * 인증 포기(미신청 포함) 및 갱신 탈락자가 1년 내 인증을 재신청할 경우 갱신기준으로 심사하고, 갱신 통과자는 홍보·마케팅, 판로지원 사업 등에 우선 참여토록 우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인증, 1년간 사업 중단, 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인증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상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현장점검 등)를 농식품부에 공문 송부**
- 인증사업자의 갱신·취소 등으로 기존 인증서가 변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는 해당 인증서를 즉시 파기하고 담당자, 일시, 인증서 번호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별도 관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 신규 인증/갱신 절차 안내, 인증심사, 취소 등 사후관리 철저
 - 시도(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합동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

- ☞ **원물 사용** : 주원료 사용비율(지역산 50%, 국산 100%)은 원산지 단속정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위반시 인증 취소 및 인증신청 제한(3년간) 등 조치
- ☞ **인증 표시 등 위반** : 인증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품목(제품) 외 인증 로고 등을 사용하거나, 인증 탈락자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경우, 계도기간(3개월)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지자체는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

- (예비)사업자 대상으로 창업교육, 스타트업 스쿨을 운영하고, **인증사업자 역량 및 서비스교육 강화**
- * 각 지원센터별로 해당 지역의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이상 실시 (교육과 점검 병행 가능)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 정기적으로 농식품부와 시도별 지원센터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운영하여 인증제, 현장코칭, 판매플랫폼 운영 등 시기별 이슈 논의
- * 필요시 시도 담당자 및 농업인 등을 참석하여 현장의견 수렴 및 규제발굴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사기진작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 개최 (상·하반기)



| 역량강화교육



| 우수사례경진대회 - 지역예선심사



| 우수사례경진대회 - 본선대회



| 선진지 견학

**제주도의 꽃으로
K-뷰티를 알리다**

3월의 6차산업인
(주)제주사랑농수산
양경원 대표

|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2018년 3월

**핑먹고 알먹고~
건강챙기고 오감만족까지
농가소득 효자 노릇
6차산업에 성공**

10월의 6차산업인
제주민속식품, 사월의 핑
강주남 대표

|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2019년 10월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신규·갱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는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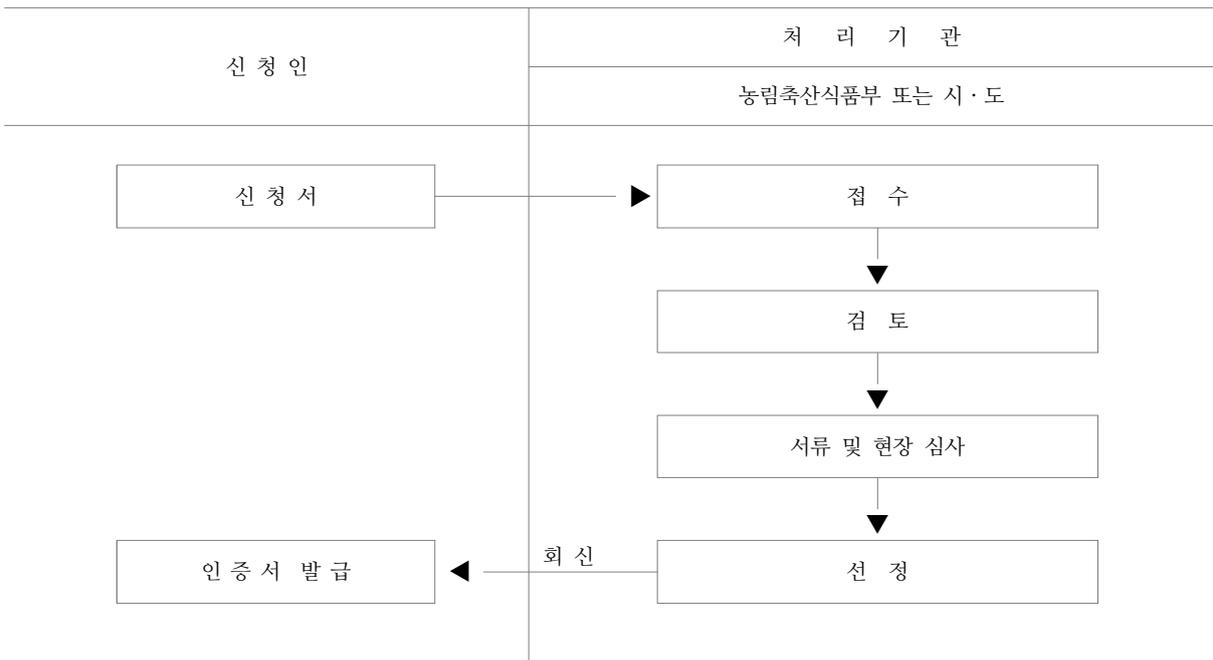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5쪽 중 1쪽)

사 업 계 획 서(신규)

I. 추진 사업의 명칭 :

II. 사업자 일반 현황 (작성일 기준: . . .)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 립 일	
연락처			
주소			
업종		자본금	백만원
주 생산 품)			
매출액 및 고용 현황 <small>*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매출액: 백만원 * 농산물 생산(1차): , 농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 ■ 고용 현황: 총 명 * 유급종사자: 명(상시2): 명, 임시3): 명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small>* 해당부분 √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small>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농장면적 : m²(전 답)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 m²(전 답)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3차	공장면적 : m ² (대지 건물) 시설면적 : 체험 m ² , 음식점 m ² , 숙박 m ² , 직매장 m ² , 기타 m ²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 명	
특이사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 순으로 기재)		

- 1) 매출액 기준 상위 3가지 상품(제품)을 기재하며, 사업자의 주요 분야가 식당(농가맛집 등)일 경우 매출 상위 3개 메뉴를 기재합니다.
- 2)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3)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원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Ⅲ.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 [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기본역량]

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품평회·박람회 등 수상실적(도단위 이상) (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Ⅳ.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 [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추진 실적]

①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 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0 년(인증신청 전년도)			
20 년(인증신청 전전년도)			

② 고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고용인원	유급종사자		무급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 년(인증신청 전년도)					
20 년(인증신청 전전년도)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p>	<p>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과의 연계성</p> <p>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p> <p>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p>	<p>2차 가공, 3차 체험·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3년간 계획에 대해 기술</p> <p><농산물 확보 현황> ※ 전년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품 목</th> <th rowspan="2">총 소요량 (톤)</th> <th rowspan="2">자가생산</th> <th colspan="2">계약재배</th> <th colspan="2">매입(농협 등)</th> </tr> <tr> <th>지역내 농가</th> <th>지역외 농가</th> <th>지역내</th> <th>지역외</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small>* 지역: 사업장(경영체)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의미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을 포함</small></p>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향후 확보 계획〉 ※ 향후 3년간 연평균

* 작성 예시 : [향후 3년간(당해년도 포함)의 계획 30톤 / 3년] -> 10톤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 타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붙임 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갱신 인증 시 사업계획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7쪽 중 1쪽)

사 업 계 획 서(갱신)

I. 추진 사업의 명칭:

II. 사업자 일반 현황 (작성일 기준: . . .)

성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연락처			
주소			
업종		자본금	백만원
주 생산 품4)			
매출액 및 고용 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 총 매출액(전년도): 백만원 * 농산물 생산(1차): , 농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 ■ 고용 현황: 총 명 * 유급종사자: 명(상시5): 명, 임시6): 명)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사업장 현황 * 해당부분 √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 [] 자가생산 농장면적: m ² (전 답)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m ² (전 답)	
	2차	* [] 자가생산 시설면적: m ² (하우스 축사 기타)	
*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m ² (하우스 축사 기타)			
3차	공장면적: m ² (대지 건물)		
		시설면적: 체험 m ² , 음식점 m ² , 숙박 m ² , 직매장 m ² , 기타 m ²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명	
특이사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운영 현황	* [] 해당 없음 * [] 설치·운영(아래 내용 작성)		
	① 시설 주소:		
	② 건축물 종류: ③ 사업계획 승인일자:		

4) 주생산품란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3가지 상품(제품)을 기재하며, 사업자의 주요 분야가 식당(농가맛집 등)일 경우 매출 상위 3개 메뉴를 기재합니다.
 5)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6)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 인원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Ⅲ. 추진실적

추진실적	①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 ② 매출·수출 실적					
1.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실적 (3년간: 갱신연도 미포함)						
① 주력제품(상품)의 지역 농산물 사용실적(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내 매입 등)						
연도	주력 상품명	농산물	소요량 (ton)	지역농산물 사용량(ton)	지역농산물 사용비율(%)	조달방법 (자가, 계약, 매입)
20 년 (갱신신청 전년도)	주력 상품 1	농산물①				
		농산물②				
		농산물③				
	주력 상품 2					
20 년 (전전년도)						
20 년 (인증(갱신) 년도, 전전전년도)						
②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 현황						
계약농가 (성명, 농원명)	계약기간 (년/월~년/월)	계약품목	계약물량 (kg)	지급금액 (천원)		
2.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 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0 년(갱신신청 전년도)						
20 년 (전전년도)						
20 년 (인증(갱신)년도, 전전전년도)						

추진실적	③ 고용실적, ④ 사업자 역량강화 실적, ⑤ 기타				
3. 고용실적 (단위: 명)					
구 분	총 고용인원	유급종사자		무급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 년(인증신청 전년도)					
20 년(인증신청 전전년도)					
20 년(인증(갱신)년도, 전전전년도)					
<p>*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p> <p>**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p>					
4. 사업자 역량강화 실적					
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품평회·박람회 등 수상실적(도단위 이상)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5. 기타					
기타 사업성과 자유 기술					

IV.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향후 3년간)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	①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②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p>1.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p> <p>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추진체계, 농촌융복합산업 형태 기술: 1차·2차·3차 산업 간 연계 형태, 2차·3차 산업과 1차 산업과의 관계, 부가가치 제고 방식</p> <p>2.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p> <p>신상품 개발, 제품의 구체적인 판로 확보방안(직매장 활용, 온라인 판매, 체험객 유치 등), 고객 확보 노하우, 홍보·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계획의 독자성, 창의성,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포함</p>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과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차 가공, 3차 체험·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3년간 계획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 전년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품 목</th> <th rowspan="2">총 소요량 (톤)</th> <th rowspan="2">자가생산</th> <th colspan="2">계약재배</th> <th colspan="2">매입(농협 등)</th> </tr> <tr> <th>지역*내 농가</th> <th>지역외 농가</th> <th>지역내</th> <th>지역외</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d>톤</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 지역: 사업장(경영체)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의미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을 포함																																																						

〈향후 확보 계획〉 ※ 향후 3년간 연평균

* 작성 예시: [향후 3년간(당해년도 포함)의 계획 30톤 / 3년] -> 10톤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 타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V.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계획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작성

1. 기존에 승인받은 운영 계획

2. 주요 변동사항

붙임 11**자가생산 증명서(서식)****자가생산 증명서(00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붙임 12 **계약재배 협약서(서식)**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_____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_____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붙임 13 소규모 매입 증명서(서식)

소규모 매입 증명서(00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① 총괄

고용인 (雇用人)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연도	근무자	연간 근무 시간	연간 보수
2019년	계	0000시간	원
	근무자A	0000시간	원
	근무자B		
	근무자C		
2018년	계	0000시간	원
		0000시간	원
2017년	계	0000시간	원
		0000시간	원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② 월간 (00년도)

고용인 (雇用人)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월	근무자	월간 근무 시간	월간 보수	확인	비고
계		0000시간	원	*근무자 서명	
1월		000시간	원	*근무자 서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③ 일간 (00년도 00월)

고용인 (雇用人)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근무자	근무자 성명	(인)

근무일	근무 일시	근무 시간
계	-	000시간
1일	00시~00시	00시간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붙임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신규인증 심사표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융복합산업기반(40)	1.사업체의역량(30)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초 역량(10)	1-1.사업주(경영주)의 3년간(신청년도 포함) 관련 교육 참가	횟수 10	4회 이상 10	3회 8	2회 6	1회 4	0회 2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10)	1-2. 최근 3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10	8	6	4	2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구축(10)	1-3.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10	8	6	4	2
	2.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10)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10)	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전년도 기준)	비율 (%)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10	10	8	6	4	2
	향후사업계획(60)	3. 발전가능성(30)	완성도(10)	3-1. 1차, 2차, 3차 산업간의 융복합성	10	10	8	6	4
창의성, 경쟁력(20)			3-2.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및 타 경영체와의 차별성	20	20	16	12	8	4
4.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20)		지역농업과의 연계성(10)	4-1. 지역농업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10	8	6	4	2
		지역사회와의 연계성(5)	4-2.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5	4	3	2	1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성, 활용성(5)	4-3. 지역 내 관광자원,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을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5	4	3	2	1
5. 계획의 타당성(10)	계획수립의 적절성(10)	5.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5. 가점 (5)		인증 및 자격 취득 정도(1점), 신상품개발 및 특허 출원(1점), 수출실적(1점), 관련 수상실적(2점)		5	_ 점				
합 계				105	점				
심사자의견									

붙임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갱신인증 심사표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 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획 이행 및 사업 성과 (40)	1.사업 성과(40)	계획이행의 충실도(10)	1-1.기존 계획서에 담긴 세부사업, 목표 달성 여부 ※ 현장 실사 중심으로 평가	10	10	8	6	4	2
		지역농업활성화 기여도(10)	1-2. 최근 3년 간(갱신년도 미포함)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비율 (%) 10	70% 이상 10	65% 이상 8	60% 이상 6	55% 이상 4	50% 이상 2
		지역 내 일자리 유지(10)	1-3. 최근 3년간(갱신년도 미포함) 지역내 일자리 유지 [‘20년 산출 예시 : [(‘19년+‘18년+‘17년)/3]÷‘17년*100	비율 (%) 10	유지 10	3%내 감소 8	6%내 감소 6	9%내 감소 4	10%이상 감소 2
		매출 유지율(10)	1-4. 3년간 매출 유지율 [‘20년 산출 예시 : ‘18년 매출증가율(%) (17년대비)+‘19년 매출증가율(%) (18년 대비)]	비율 (%) 10	유지 10	3%내 감소 8	6%내 감소 6	9%내 감소 4	10%이상 감소 2
향후 사업 계획 (60)	3. 발전 가능성 (30)	완성도(10)	3-1. 1차, 2차, 3차 산업간의 융복합성	10	10	8	6	4	2
		창의성, 경쟁력 (20)	3-2.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및 타 경영체와의 차별성	20	20	16	12	8	4
	4.지역농업 (사회)과의 연계성 (20)	지역농업과의 연계성(10)	4-1. 지역농업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10	8	6	4	2
		지역사회와의 연계성(5)	4-2.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5	4	3	2	1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성, 활용성(5)	4-3. 지역 내 관광자원,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을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5	4	3	2	1
5.계획의 타당성 (10)	계획수립의 적절성(10)	5.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융자 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5. 가점 (5)		인증 및 자격 취득 정도(1점), 신상품개발 및 특허 출원(1점), 수출실적(1점), 관련 수상실적(2점) 최근 3년간 지역내 일자리 창출 2%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7% 이상 추가		5	_ 점				
합 계				105	점				
삼사의견									

(뒤쪽)

< 변경 사항 >

일 자	내 용	확인
20 . .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농촌산업과

붙임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신청단위 []농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승계일	
	사업장 소재지		
	승계 사유 [] 상속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 사업자 승계사실 증명 자료 2. 기 발급된 인증서	수수료 없음
------	--------------------------------------	-----------

동 의 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승계인 정보와 승계 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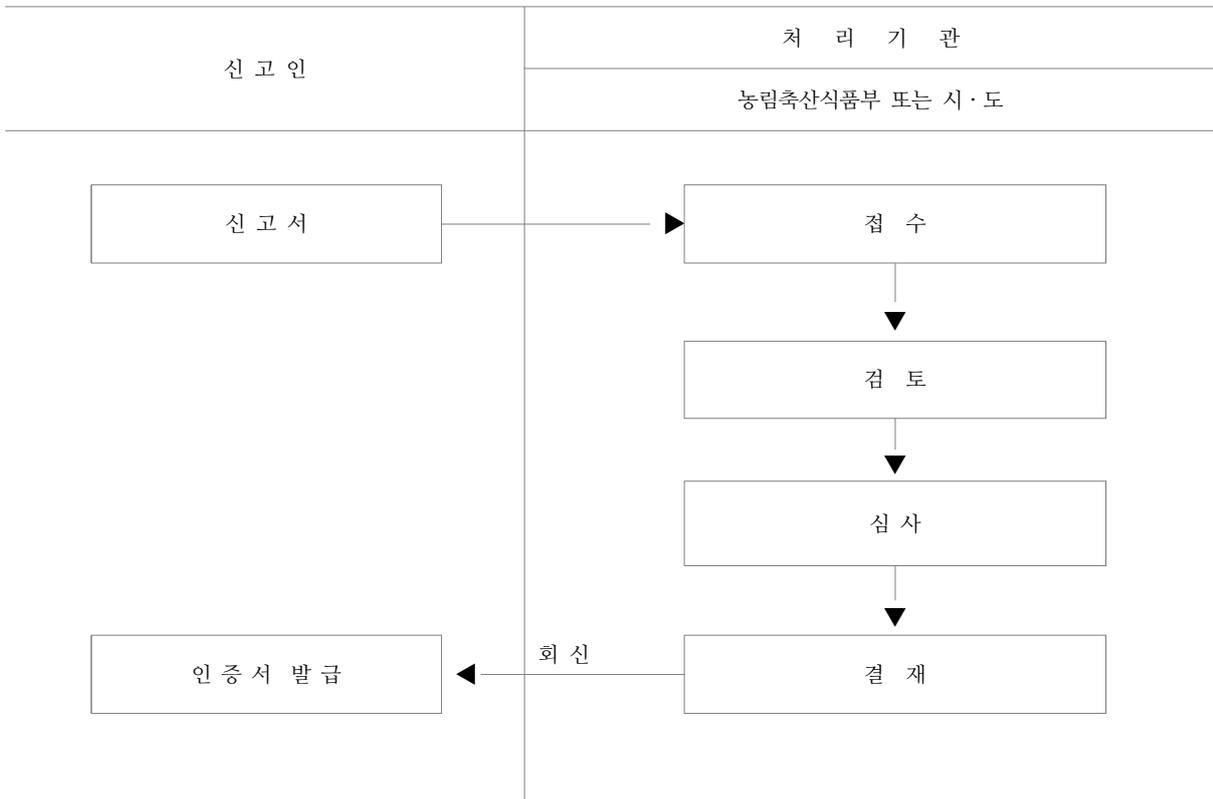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승계인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승계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 농촌융복합산업 통계시스템 고도화

기본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매출액, 고용현황, 변경 이력 등 주요 통계정보 활용
- 예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관심 고객의 정보 접근성 제고

▶ 개요

- **목적** 농업인·소비자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정보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증사업자 DB구축을 통해 통계추출 등 관리용이성 향상
- **주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위탁수행(국비 100%)
* 인천·세종 제외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도에서 인근 광역시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까지 관할
- **현황**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사이트(www.6차산업.com)를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대표자, 매출액, 고용현황 등 사업자 정보를 포함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성과관리시스템 DB 정보 현행화

- 각 지원센터는 성과관리시스템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신규·갱신·내용 변경 시 수시로, 지원센터별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업데이트**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온라인이벤트, 홍보콘텐츠 현행화,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 시스템 안정화

▶ 인증사업자 재발급·승계사유 발생 시 온라인 시스템 자료 현행화

- 지원센터는 승계(재발급) 접수 시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변경이력을 엑셀파일 형태로 농어촌자원개발원에 공문 송부
- 농어촌자원개발원은 승계·재발급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농식품부에 대상자 공문을 송부하고, 농식품부는 변경된 인증서 발급

3.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기본방향

- 상시적 컨설팅 및 현장코칭으로 경영체의 안정적 성장 지원
- 농업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자립화 유도

▶ 개요

- **목적** 예비창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분야별(기술, 경영 등) 매칭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 유도
- **주체**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위탁(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인천·세종 제외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도에서 인근 광역시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까지 관할
- **현황** '19년도 현장코칭 전문위원 : **729명 위촉**(시도별 중복 제외 시 602명)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729	96	46	74	52	112	85	40	94	55	36	39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누적) : (16) 1,894건 → (17) 3,974건 → (18) 6,320건

-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관련 협동조합·법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농협 등
*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되어야 하며 창업준비 중인 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상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조항 예외 적용

컨설팅 지원 분야

구분	지원대상 분야
경영	•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기술	•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기타	•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이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간및비용
유형 ① (일반 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전문가 코칭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목적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 	경영체당 1회 50만원 (최대 4회, 200만원)
유형 ② (제품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 입점을 전제로 제품 품질관리, 포장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코칭 	경영체당 1회 300만원 (최대 2회, 600만원)
유형 ③ (보육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단,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상시 모니터링·컨설팅 	경영체당 1개월 100만원 (최대 12개월, 1,200백만원으로 월 4시간 이상)

- 코칭은 동일한 분야 또는 각각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유형 ②의 경우, 유통채널 입점제품이 2개 품목 이상일 경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로 기존 입점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입점하는 조건으로 인정
- 유형 ③의 경우, 보육기간 및 방문주기는 경영체가 선택하며 방문시간에 따라 지급(월 4시간 이상 기준)
 - * (예시 1) 5개월간 월 2회 이상 방문 또는 3개월간 월 1회 이상 방문
 - (예시 2) 월 2회 × 2시간 = 4시간 또는 월 1회 × 4시간 = 4시간
- 유형 ③의 경우, 1명의 보육매니저가 동시에 경영체 2개소까지 보육할 수 있고, 다른 유형(①, ②)의 현장코칭사업은 수행 가능

▶ 추진 절차



① 전문위원 POOL 구성

- 위원구성** 각 지원센터별로 위촉되어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www.6차산업.com)에 공개된 전문가 명단* 활용
 - *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 내 정보공개에 동의한 전문위원으로 제한
- 운영** 경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발굴을 위해 민간분야 전문가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단체)를 위촉
 - * 기존위원 : 전년도 코칭실적 및 만족도 등을 평가(전문위원 실적 및 만족도 등 평가계획은 별도시행 예정)하여 위·해촉 여부 결정·통보
 - ** 신규위원 : 공모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자격 요건 검토 후 선정

전문위원 선정절차 및 자격 요건

· 선정절차

- ▽ 모집방법 : 공모 또는 추천* (시도 지원센터)
 - *해당 지자체 농정심의회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
- ▽ 모집범위 : 전국단위
-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 제출서류 : 전문위원 지원신청서, 경력증명서, 컨설팅실적(해당자), 자격증사본(해당자) 등
- ▽ 선정기준 : 해당분야 실무, 학력 및 자격, 컨설팅 경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자격요건

농촌융복합산업 보육매니저 및 현장코칭 전문가는 경영, 회계, 세무, IT, 유통, 상품개발, 식품개발, 디자인, 관광, 외식 및 브랜드개발, 인증, 제조가공 시설·설비 등 관련분야에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 4년 대학을 졸업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기능장,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농업마이스터,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
- ▽ 전문자격증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을 보유한 자 중, 관련분야에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매출액 30억원 이상 및 사업기간 15년 이상인 인증사업자 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인증사업자 CEO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자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자

- **위촉** 전년도 실적 및 신규 전문위원 공모·추천제출(지원센터) → 실적평가 및 자격요건 검토·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에 게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보육매니저는 전문위원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에서 선정·추천하며 보육매니저 운영 관리는 현장코칭 전문위원과 동일
- **해촉** 전년 실적 및 만족도 평점 60점 미만(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
* 부주의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자문 등에 현저한 문제(불성실, 근무태만 등)가 있을 경우 기간 중에도 해촉 가능



| 제주6차산업 전진대회



| 현장코칭위원 위촉식

② 컨설팅 매칭

- **사업안내**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 각 시도 및 지원센터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에 공개하고, 언론 및 사업설명회 참석한 경영체 대상 중점 홍보
- **접수** 신청자에 대해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수시로 방문·우편·팩스·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하며, 애로사항 등을 유선 또는 현장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시 전문위원 매칭 추진
* 지원센터 여건에 따라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활용 가능(사업비 내 예산 활용 가능)
- **매칭 및 통보** 코칭 분야 및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보육매니저 또는 전문위원을 배정하고, 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금액납입** 전문가 매칭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자는 유형별 자부담 금액(총비용의 20%)을 해당 지원센터 통장계좌*에 입금하며, 납입**은 별도의 협약서(양도동의서)없이 협약한 것으로 같음
* 지원센터 명의의 별도계좌 개설 후 자부담 입금 계좌로 활용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사업 수익금'으로 처리하되 자부담금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므로 부가세 등 세금 문제는 발생되지 않음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을 받는 경영업체가 지원센터에 본인 상담 및 현장코칭사업 참여에 따른 비용 지급권을 양도

③ 컨설팅 수행

- **계획서 접수** 지원센터는 신청 및 상담내용 등을 전문위원에게 제공하고, 전문위원은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수행(보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와 신청인에게 제출
* 수행계획서는 방문시기, 코칭분야·범위 등에 대해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작성하며, 지원센터에 제출 시 일종의 협약으로 간주
- **컨설팅 진행** 유형별로 전문가 상담 및 현장코칭을 진행하되, 경영진단*을 통한 분야별 경쟁력 파악
* 보육매니저 상시컨설팅 시 경영진단 매뉴얼(서식5-1) 활용하고 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분야는 별도 전문위원 없이 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위원은 상담 및 코칭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서식 3)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육매니저는 활동실적을 바탕으로 월 1회 지원센터와 경영체에 제출
* 수행결과 보고서 추가내용 보완 필요 시 1회에 한해서 지원센터 협의 하에 기간 연장 가능

④ 사업결과 분석 및 정산보고

- **정산**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이 완료되면 수행결과의 적정성, 경영체의 만족도(서식 4) 등을 유선 또는 방문하여 점검하고, 수입료 지급
 - * 신청인이 납부한 자부담을 포함한 총 비용으로 전문위원의 수행(보육)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별도 수입료 없음
- **모니터링** 각 시도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1회 이상)하고, 컨설팅 중 부정,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력
 - * 신청접수, 상담 및 전문가매칭 절차, 자금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고 농식품부(농어촌공사)는 시도의 점검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달할 수 있고, 농식품부 단독 또는 시도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 **사후관리** 지원센터는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표를 농식품부(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농어촌공사는 전문위원의 만족도 내용을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에 등록
 - * 불성실한 전문위원은 위촉기간 중에도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외될 경우 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은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현황에서 삭제

▶ 농촌융복합산업 디딤돌 멘토링 추진

- **관련법률***에 따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인증경영체(소규모·여성·청년기업 등)에 대해 자금융자, 홍보·컨설팅, 판로확대 우선지원 필요**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소규모 사업자 지원), 제37조(농촌여성지원)
- **유통채널(대형마트, 백화점 등) 입점을 전제로 제품 품질관리, 포장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제품컨설팅*** 수입료 전액 지원을 통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인증사업자의 **안정적 경영성장 유도**
 - * 유통채널 입점(기존 입점제품 제외)을 전제로, 제품패키지 개선 등을 위해 경영체당 최대 300만원의 제품 컨설팅 진행, 유통채널과 접촉 가능한 컨설턴트 적극적 매칭
 - ** 디딤돌 멘토링 세부사업 시행 계획은 별도 송부 예정

서식2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계획서

1.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매출액	
담당자		휴대폰	

2. 애로사항(현황 및 문제점)

※ 경영체가 요구하는 핵심 코칭 희망내용 등을 작성

3. 코칭기간 및 방향

4. 목표 및 예상 결과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전문위원 (날인 또는 서명)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결과 보고서

1.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매출액	
담당자		휴대폰	
코칭 유형	예시> <input type="checkbox"/> 1유형(50만원) <input type="checkbox"/> 2유형(300만원, 유통업체 입점조건) <input type="checkbox"/> 3유형(월 100만원/4시간이상, 최대 12개월)		
코칭 신청분야			

2. 현장 코칭개요

전문 위원	소 속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담당자
	이 름	(서명)	직, 성명
	연락처		
현장코칭 일시 및 장소	1회차 : 2020.3.20.(화) 10:00~17:00(7시간), ○○영농조합법인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횟수에 맞게 추가 작성		

3. 현장 코칭 내용

○회사
※ 회사별/월별 구체적인 코칭내용 작성(관련 사진자료 첨부)

4. 개선사항

※ 상시컨설팅, 현장코칭 등을 통해 개선된 사항, 성과 등 ※ 유형②(제품 컨설팅)의 경우 입점성과 (입점확인서, 입점계약서 등 유통업체 입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첨)
--

5. 향후 업체 조치 필요사항

※ 코칭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업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만족도 조사표(안)

1. 신청업체 및 전문위원

조사일시	2020. . .	조사자	
신청업체		대표자	
전문위원			

2. 만족도 조사표

구분	설문내용	항목별 배점				
전문가 역량	이번에 받으신 현장코칭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0점)	(8)	(5)	(3)	(1)
	이번에 받으신 현장코칭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번 현장코칭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높고 현실성 있습니까?					
	코칭 전문위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칭 전문위원이 문제의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코칭 전문위원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가?					
코칭 전반	코칭 희망분야에 적합한 전문가가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코칭 진행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코칭을 다른 경영체에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향후 현장코칭을 또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합계	__ 점					
기타 의견						

※ 만족도 조사는 코칭이 최종 종료(최초 신청한 코칭횟수가 종료된 후)에 조사

붙임1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안내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코칭지원 및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방문코칭 제공

1. 사업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성장 유도

2.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관련 협동조합·법인, 농촌마을, 작목반, 들녘경영체, 농협, 산림조합
 - ▶ 민박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한정
 - *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함
 - *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조항 예외 적용

3. 시행기관 : 시장·도지사

- 현장 코칭사업은 **관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수행

4. 지원 분야

분야	지원대상분야
경영	●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기술	●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건축·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기타	●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이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5. 지원조건 및 내용

- **코칭횟수 및 기간**
 - 유형 ①(일반코칭) : 경영체당 1회 50만원(최대 4회)
 - 유형 ②(제품컨설팅) : 경영체당 1회 300만원(최대 2회, 유통업체 입점조건)
 - 유형 ③(보육매니저) : 경영체당 1개월 100만원(최대 12개월, 월 4시간 이상)
- * 코칭은 동일한 분야 또는 각각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

• 코칭비용

- 유형 ① : 회당 5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200만원
- 유형 ② : 회당 3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600만원
- * 유통채널 입점을 전제로 제품패키지 개선 등을 위해 필요 시 회당 300만원 코칭 가능하고, 입점제품이 2개 품목 이상일 경우 2회까지 코칭 가능(최대 600만원)
- ** 유통채널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온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입점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입점할 경우 인정
- 유형 ③ : 월당 1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1,200만원
- * 보육 기간 및 방문주기는 경영체가 선택/ 월 최대 100만원 지급/ 방문 시간에 따라 지급(월 4시간 이상 기준)
(예시 1) 5개월간 월 2회 이상 방문 또는 3개월간 월 1회 이상 방문
(예시 2) 월 2회 × 2시간 = 4시간 또는 월 1회 × 4시간 = 4시간
- ※ 작목반·마을 등이 공동으로 코칭을 받는 경우에도 자부담 적용 동일

6. 사업기간

모집공고일 ~ 12월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7. 추진절차

신청·접수 → 상담(지원센터 ↔ 신청자) → 전문가 매칭 및 통보(지원센터 → 신청자)
→ 자부담 입금 → 현장코칭 → 만족도조사 및 완료점검

8. 신청·접수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메일 접수
- 문 의 처 : 사)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 담 당 : 김승주 연구원 (T.064-722-7917)
- 이 메 일 : stormand@jeju6th.kr

9.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개별농가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1부

붙임2

현장코칭 전문위원 위촉분야

분야	분야	특기분야
경영 (6)	경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경영전략, 품질경영, 환경경영 등
	마케팅/홍보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시장조사, 유통채널, 식품 소비트렌드 등 • 스토리텔링, SNS 등 활용 홍보방안 •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선 방안, 인테리어 등
	재무/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등 • 생산관리, 원가분석 등
	지적재산권/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 보호 자문, 지적재산권 관리 등 • 창업 관련 법인등록 등 법률 자문
	농촌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광 창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자문 등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소비트렌드, 생산제품별 해외 유통채널 확보 방안 자문, 할랄인증, 원산지표시 등
기술 (5)	제품개발/ 가공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등 • 가공기술 검토 및 진단, 개선방안 상담 및 지도 - 농축, 살균, 여과, 냉장 및 냉동, 저장기술 등
	공장신축·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 개선(신축, 증개축, 동선 개선 등)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검사(이화학, 미생물 등), 공정관리 등 • 식품 관련 법규 이해 및 준수방법 등 • HACCP, 식품안전관리 등 • 제조공정의 검토 및 진단, 개선방안 상담 및 지도 - 생산능력 저하요인 규명, 기계장비의 효율성 평가, 생산설비의 재배치, 제품생산 자동화 등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화, SNS활동, 쇼핑몰 구축·운영 등
	음식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 개선 및 개발, 농가레스토랑 개설 및 운영 등

※ 상기 분야 이외에 새로운 코칭분야 추가 가능

4.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기본방향

- 창업초기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제품개발, 단점보완 등 시험 공간 제공
- 지역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활용하여 소비자 홍보 극대화

▶ 개요

- **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촉진**
- **주체**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위탁수행(국비 50%, 지방비 50%)
 - ① **안테나숍**
소비자반응 및 성향을 파악하고,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종의 테스트 공간으로 마케팅 거점 활용
 - ② **판매플랫폼**
대형마트, 온라인 등 프로모션을 활용한 기획전축전을 개최하고 유통업계 상생협력 및 인증사업자 홍보 지원
- **현황** '19년도 안테나숍 개설, 플랫폼 조성 현황: **41개소 / 148회**

구분	총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안테나숍	41	2	3	4	3	5	4	6	2	6	2	4
플랫폼	148	20	8	21	12	10	11	6	32	19	7	2

▶ 세부 추진내용

- **방향** 지역별 시장규모, 판매장 입지, 고용 가능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안테나숍과 판매플랫폼 비율 조정 및 사업계획 수립
* 단, 수도권 등 지역 외 안테나숍, 판매플랫폼 사업계획 구성 시 농식품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운영** 온오프라인 형태, 고용인원, 품목제한 등은 없으나 **안테나숍·판매플랫폼 중 경쟁력 있는 지원 형태를 선택하여 1종류 이상 필수 추진**
- **연계지원** 제품 개선을 위해 현장코칭 지원사업과 연계가능하며, 소비자 반응 및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비온드팜 등 중앙단위 판촉사업에 우선참여

▶ 추진 절차

진행	① 위탁기관 선정	② 제품선정	③ 판매진행	④ 사업결과 분석 및 정산보고
추진 기관	농촌융복합 산업지원센터	농촌융복합 산업지원센터	위탁기관	농촌융복합 산업지원센터
역할	직접 위탁 또는 사업자 선정 공모 진행	지역품평회 개최 등 제품 선정	인테리어 구성 및 제품 홍보	수행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① 위탁기관 선정

- 직접위탁 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또는 경제진흥원 등 관련 업무 전문 산하기관에 별도 공모 없이 위탁 가능함
 * 운영계획 및 상품발굴건수, 매출목표액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 제시 필요
- 공모 시** 판매 프로그램 운영, 상품 발굴건수, 매출목표액, 방문객 수 등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심사 후 선정
- 자금용도** 설치장소 임차료, 인테리어, 지역품평회, 전문가 수당, 출장비, 홍보비, 민간위탁수수료 등
 *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5% 내외) 외 일반이윤 보장

| 안테나숍



이마트 서귀포점



이마트 신제주점



이마트 태동점



이마트 울산점



이마트 목동점



성산포항점

② 제품 선정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생산제품으로 생산된 제품 대상 전문가(유통업체 MD, 컨설턴트, 농협관계자 등)로 구성된 지역품평회를 거쳐 안테나숍·판매플랫폼 참여업체 및 제품 선정
* 스마트콘텐츠 제작 사업에 참여한 인증경영체 또는 여성·청년·고령농의 경우 우선 입점기회 부여
- 지원센터는 입점업체 운영실태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제품 진입, 부실제품 퇴출 등 선의의 경쟁 유도

③ 판촉전 진행

- 농촌융복합산업의 공통된 브랜드아이덴티티(BI) 구현하고, 매장관리를 매뉴얼화하여 진열대, 판매원 등 매장관리 강화
- 주 소비층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관리카드 등을 작성하여 방문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품정보 등 정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 추진
- 대형유통매장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지역특산물 홍보 등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소비자 관심도 제고 유도



| 6차산업국제박람회



| 6차산업 우수제품 유통품평회



| 6감만족한마당행사

5. 중앙단위 제품판로 확대

기본방향

- 대기업, 타기관 우수 플랫폼 등과 연계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
- 새로운 유통망,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 시범사업화 하여 선도모델 창출

▶ 개요

- **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대규모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기회 부여 및 프로모션 진행으로 경영체 자립화 유도**
- **주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국비 100%)
- **현황** 명절 연계 판촉전 개최, 마이크로 유통채널 발굴, 민간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 등 전방위적 판로확대 노력

주요 추진 내용

-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편의점 입점을 위한 품평회 개최**
 - 전문 MD(20명) 대상 편의점(세븐일레븐) 입점 품평회 개최(45개소, 89개 제품 참여)
- ▶ **한국관광공사 연계 외국인 전용 6차산업 전시관(인사동) 개관**
 - 한국관광명품점(인사동) 내 스마트 콘텐츠 참여 49개 경영체, 212개 품목 전시
- ▶ **인천공항 내 면세점 6차산업 판매관 시범개설**
 - 씨티면세점 내 12개 경영체, 60개 품목 전시
- ▶ **한화리조트(14개) 사업본부 담당자 대상 6차산업 체험행사 추진**
 - 홍천동키영농조합법인 “당나귀우유 비누만들기”, 에덴양봉원 “밀랍초만들기”
- ▶ **대한민국 명품페스티벌 박람회 참여**
 - 농촌융복합산업 특별관을 개설(총 52개 경영체 참여) 소비자 대상 우수제품 홍보·마케팅
- ▶ **수도권 민간주도형 전문판매관(비온드팜) 1호점 개편**
 - 리모델링[기존 20㎡(6평)에서 43.2㎡(10평)로 규모 확대] 및 체험교실(경영체 5개소) 운영 등
- ▶ **명절·여행주간 온·오프라인 기획전 진행**
 - 11번가, 우체국몰, 농협하나로마트 등 설·추석 기간 온·오프라인 기획전 진행

▶ 세부추진방향

①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 **온라인** 우체국몰, 식품전문 온라인몰 등을 이용하여 계절별·테마별 주제에 부합하는 인증제품 판촉행사 추진
- **오프라인** 명절, 여행주간 등 수요가 높은 시기에 농협·이마트 등 대형유통사와 연계한 판촉전 개최 및 BI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 **품평회** 유통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생산자·판매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경쟁적 시장입점 유도
- **해외 판로지원** 농진청, 인증사업자 협회 등과 연계 해외 판촉행사 및 판로확대 지원

② 스마트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관련 정보**(생산자, 원산지, 공정과정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비온드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스마트 콘텐츠 참여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되 웹콘텐츠 활용 등 **참여 경영체 대상 사업설명을 강화**하고, 종합홍보·판매전 등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우선 지원**

③ 수도권 민간주도형 전문판매관 운영 및 체험행사 확대

- **민간 주도형 전문판매관**

소비수요가 높은 수도권 **고객유치를 위해** 입지여건·매장성격 등 대형마트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선도 거점을 마련하여 비온드팜 인테리어·인건비·프로모션비 등 지급**

* 홍보효과·매출실적 등이 우수한 카페형 매장인 비온드팜 1호점(잠실)은 '20년 지속하고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매장 등을 추가 개설

- **상설체험**

체험가능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적극 발굴하여 체험비,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등 지원하고, 청년·주부 등 바이럴마케팅을 활용한 참여 활성화로 소비자 직거래 유도

6. 농촌융복합산업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

기본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6차산업 품토 조성
-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직접 체험형 홍보 확대

▶ 개요

- **목적** 우수사례 발굴, 제품 소비촉진 홍보 등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기여**
- **주체**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국비 100%)
- **현황** 농촌융복합산업브랜드 가치 확산 및 소비트렌드를 연계한 상품정보 제공 등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우수성 전파**

주요 추진 내용

- ▶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서천소곡주(지역단위), 지리산피아골식품(개인)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 발굴
- ▶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언론보도**
 - 매월 1인씩 총 12건을 선정하여 헤럴드 뉴스·연합뉴스 등 88건 기재
-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집중 조명**
 - 성공모델, 고용창출, 농업·농촌 이미지 제고 등 정책효과 조명
 - * 동아일보 지면 및 온라인 기획기사(4회), 기고(2회), 네이버 주제판 JOB& 기획기사(1회)
-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마크 광고 캠페인 진행**
 - 인증로고를 약속마크로 활용, 믿고 먹어도 된다는 농촌융복합산업 이미지 강조
 - * TV(30초, 159회), 온라인(180초, 910만명 노출) 각 1편씩 제작 방영
- ▶ **농촌융복합산업 콘텐츠 온라인 확산**
 -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수요자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확산(343건)
 - *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농촌체험 홍보(10회), 유튜브 활용 정책홍보(10회), 스타상품 소재 웹툰 제작(2회), 카드뉴스 제작(36회), 온라인이벤트(28회) 등 진행

▶ 세부추진방향

①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비 인증 우수경영체가 참여(농촌진흥청 협의)하고 성과보고회와 통합운영하는 등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간 상호 벤치마킹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축제의 장으로 활용

②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보도

- 매월 우수 농촌융복합산업인을 발굴하여 언론보도, 콘텐츠 제작, 제품소개 등 홍보 지원

③ 농촌융복합산업 소비 촉진 유도

-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고객을 설정*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관심유도
* 10~20대의 경우 아이돌(idol)을 활용한 드라마, 예능 등 웹콘텐츠를 제작, 요리·여행을 주제로 인터넷상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여 제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소비력이 강한 30~40대의 경우 방송PPL(간접광고)을 활용하여 '안전한 국내산 먹거리'에 대한 인식·가치 확산
- 소비자 대상 원물 수확체험, 시식 등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체험을 통해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한 자발적 확산 유도

④ 농촌융복합산업 광고 캠페인 진행 및 콘텐츠 확산

- 가족, 역사, 여성 등 사회적 이슈와 연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함축한 광고 콘텐츠 제작
- 소비자 대상 팝업스토어 등 체험 가능한 현실과 이미지 광고가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고려
-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집중 조명하되, 불필요한 언론기고 등 지면을 활용한 홍보는 축소

2020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사업안내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T. 064)722-7914~8 F. 064)722-7919

www.제주6차산업.com